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6. 5.

나사렛대학교

<http://www.kornu.ac.kr/>

<http://ipsi.kornu.ac.kr>

TEL: (041) 570-7759 / FAX: 570-7711

※ 대입전형 시행계획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재외국민	순수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부/학과/전공			
기독교학부	신학전공/기독교상담교육학전공	총 10명 (학과별 모집정원의 10% 이내)	제한없음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청소년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		
인간재활학과			
수어통역교육학과			
언어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재활의료공학과			
아동심리교육학과			
경영학과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금융부동산학과			
경찰행정학과			
공공인재학과			
방송시각영상디자인학부	방송미디어전공/시각영상디자인전공		
AI융합학부	AI빅데이터소프트웨어전공/AI사물인터넷보안전공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스포츠학부	특수체육학전공/스포츠재활전공/시니어스포츠전공		
실용음악학과			
태권도학과			
계			

※ 재외국민 모집인원은 10명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이내)

※ 복수 국적자는 [순수 외국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본교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 된 학과임

2 전형 일정 및 방법

□ 전형 일정

구분	수시	정시	수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순수외국인	
		2027년 3월 입학	2027년 9월 입학
원서접수	2026. 7. 6.(월) ~ 10.(금)	2026. 11. 2.(월) ~ 2027. 1. 5.(화)	2027. 6. 1.(화) ~ 2027. 7. 9.(금)
면접고사	2026. 8. 10.(월) ~ 14.(금) ※ 개인별 일정 사전 안내	2026. 11. 17.(월) ~ 2027. 1. 6.(수)	2027. 6. 21.(월) ~ 2027. 7. 9.(금)
합격자 발표	2026. 12. 18.(금)이내	2027. 1. 22.(금)까지	2027. 7. 23.(금)까지
등록 기간	2027. 1. 22.(금)이내	2027. 1. 25.(월) 이전	2027. 7. 26.(월) 이전

※ 문의

가. 재외국민 : 입학홍보팀 Tel. 041-570-7759 / Fax. 041-570-7711 / e-mail. smj0314@kornu.ac.kr

※ 재외국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등록 일정 등 변동 시 안내 예정)

나. 순수 외국인 : 국제교류팀 Tel. 041-570-1545 / Fax. 041-570-1544 / e-mail. songiy12@kornu.ac.kr

※ 순수 외국인 전형 일정은 국제교류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방법 및 전형료

구분	전형 방법	전형료	비고
재외국민	면접 100%	50,000원 ※ 납부계좌 별도 안내	서류 검토 후 면접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이수자			
순수 외국인	서류 50%, 면접 50%	없음	

※ 모집인원 미달 시에도 수학능력(전공적합성 등 포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집 안내

□ 지원자격

○ 법령상 지원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지원자격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 본인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 지원자격 유형에 관계없이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기간, 해외근무자 재직기간(1,095일)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해외근무자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필수 자격 기준: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소지자 (단, 아래 계열/전공별은 별도 적용한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영어능력시험: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 졸업기준은 입학기준과 동일(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 어학능력 입학 및 졸업 완화 조건
· 예체능 계열: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이수, 졸업 전까지 토픽 3급 이상 취득 조건
· 국내외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KNU 주관 토픽 시험 3급 이상 점수 취득, 졸업 전까지 토픽 4급 이상 취득(영어전용트랙: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홈 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인정하지 않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함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입학원서(입학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졸업(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3. 학력 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6. 어학 능력 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졸업(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전 교육과정 이수 기간)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지원 방법 및 절차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서류 준비 및 제출 (우편 제출)			
순수외국인	1)	국립국제교육원 '스터디인코리아' (https://www.studyinkorea.go.kr/) 온라인 지원서 접수	2)	전형에 따라 면접고사 실시	3)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내용
원서 접수	우편 제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국제관 B동 지하 1층 입학홍보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담당자 앞”
전형료 납부 계좌	입학 홈페이지 추후 게시
면접고사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의 변조, 허위증명서의 제출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한다.
2. 제반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어,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 공증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3. 서류제출 시 전형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 시 지원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4.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한 후 타 대학에 추가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교에 입학 1주 전까지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5.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교 학칙에 준한다.

□ 등록금 환불 방법 및 절차

1.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타 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추가합격자 포함)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에 대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에는 환불 업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접수된 환불 신청서는 다음 평일에 접수처리 됩니다. 은행업무 마감 이후에 접수된 환불 신청서는 익일 접수처리 됩니다.
2. 본교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http://ipsi.kornu.ac.kr>) 공지사항에서 “등록포기각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 를 출력 작성 후 본교 입학처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등록포기 각서 1부(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위임장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에 한함)

3.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포기로 인한 등록금 전액 환불신청은 입학 1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의 등록금 환불은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환불됩니다.**
4. 대입전형 종료 후 대교협에서 모든 대학 신입생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검증해 대입 전형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표준화된 지원자격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해 인정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학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2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지원자 사항 전체[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검정고시, 지원자 연락처, 추가 연락처], 제출서류[입학원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에 의한 제출 서류 전체	입학업무 처리	5년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원서 제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

본인은 귀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나사렛대학교 총장 귀하